

2. 所得稅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財務部令 第1913號 1993. 3. 2

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법
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법 제1조제3
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
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
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

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
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
여 수용되는 경우(당해 주택 및 부수토
지의 일부가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
우에 한한다)

제6조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
자에게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사실 또
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
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당해종업원이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퇴직
소득의 선급금으로 본다.

제18조제1항중 “연간 도매물가지수”를 “연간 생산자물가지수”로, “월간 도매물가지수”를 “월간 생산자물가지수”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중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제1항”을 “건축법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전대부동산총수입금액의 계산)”을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소득 표준율”을 “표준소득률”로 한다.

①영 제58조제3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하도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월말 현재 임대보증금을
제 국가 또는 지방	받고 임대한 면적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
된 지하도의 건설비	월말 현재 임대가능면적

②영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보증금등의 적수는 월말 현재의 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는 방법
2. 차입금상환액의 적수는 월말 현재의 상환누계액에 경과일수를 곱하는 방법
3.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는 월말 현재의 건설비상당액에 경과일수를 곱하는 방법

제2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채무자가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 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때(당해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64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는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세·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미수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중 “영 제72조제3항”을 “영 제72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영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영 제82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5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98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건설가계정 및 그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대한 적수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순차로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frac{\text{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지급이자(미지급 적수 이자 포함)}}{\text{재고자산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 \times$$

제53조의2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4호중 “청소년육성법” “청소년기본법”으로 한다.

1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제1호중 “여행알선업”을 “여행알선업(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영 제106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국민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을 말한다.

제56조제2항중 “소득표준율”을 “표준소득률”로 한다.

제56조의5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영 제44조의2제1항제4호의 기타 자산

으로서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1.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frac{\text{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times \text{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text{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2.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text{분양가} \times \frac{\text{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text{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제50조제1항중 “직계존속·직계비속과 형제자매”를 “당해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62조제4항중 “영 제124조제2항”을 “법 제10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영 제124조제2

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산출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145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 $\frac{10}{100}$ =	자산양도차의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		예정 신고납부세액 공제액

제73조제2항중 “영 제147조제1항제8”호를 “영 제147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79조의2의 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의 대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64조제1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자”라 함은 최근 2년간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영 제164조제1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규모에 해당되는 자”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소득이 발생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1천 500만원 미만인 자
2. 영 제36조제4호 및 영 제37조에 규정된 서비스업, 영 제38조각호에 규정된 소득이 발생하는 자유직업, 영 제221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업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4천만원 미만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업종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미만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업종의 총수입금액에 10을 곱한 금액에 제2호에 규정된 업종의 총수입금액에 4를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자
5.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업종과 제3호에 규정된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업종의 총수입금액에 10을 곱한 금액에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업종의 총수입금액에 4를 곱한 금액에 제3호에 규정된 업종의 총수입금액을 더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자
6.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업종의 총수입금액에 10을 곱한 금액에 제2호에 규정된 업종의 총수입금액에 4를 곱한 금액 및 제3호에 규정된 업종의

총수입금액을 더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자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기준) 영 제16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직전연도의 것에 대한 비율
2. 당해 사업자의 직전 2년간의 평균소득률에 대한 당해 연도 신고소득률의 비교
3. 기타 신고의 성실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80조를 삭제한다.

제8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서면조사결정기준) 영 제167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서면조사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직전연도의 것에 대한 비율이나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직전연도의 것에 대한 비율
2. 당해 사업자의 직전 2년간의 평균소득률에 대한 당해 연도 신고소득률의 비교
3. 업종별·지역별 또는 사업규모별로 신고소득률의 크기에 따라 배열한 당해 사업자의 순위에 의한 기준
4. 신고상황·경영성과·필요경비지출

내역 및 경영의 건전도등을 대상으로 평가한 당해사업자의 종합평점에 의한 기준

5. 기타 신고의 선실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8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보정요구서) 영 제168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요구서는 별지 제115호서식과 같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83조제3항제2호의 산식중 “소득표준율”을 “표준소득률”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의 산식중 “소득표준율”을 “표준소득률”로 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신규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기준) 법 제184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월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1)]· [별지 제31호서식(1)부표]· [별지 제31호서식(2)]·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1)]· [별지 제54호서식(2)]· [별지 제54호서식(3)]·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

103호서식]·[별지 제105호서식]·[별지 제109호서식]·[별지 제112호서식] 및 [별지 제1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5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54호서식·별지 제102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

소득세법의 개정(1992. 12. 8. 법률 제4520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에 따라 개정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취학·질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비과세하고 있는 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제6조제2항 및 제4항).
- 나.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1993년 1월 1일부터 종업원의 퇴직금준비금에서 종업원의 표준보수월액의 2퍼센트를 퇴직금전환금으로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동 금액을 상계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이 퇴직금전환금을 퇴직금의 선급금으로 보도록 하여 이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할 때마다 과세하지 아니하고 향후 당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한꺼번에 퇴직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함(제15조).
- 다.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대손금의 범위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 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가로 포함시킴(제24조).
- 라. 장애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종전에는 본인·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도 장애자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킴(제57조).

〈재무부 제공〉

씨앗뿌린 2백만호 열매맺는 내집의꿈